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8.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가. 민생경제 회복 등 민선9기 핵심 과제 및 주요 역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조직 재편

나. 대내외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

2. 주요내용

가. 국 단위 : 증 1

1) 폐 지 : 선산출장소

2) 신 설 : 골목상권지원단(한시기구), 농촌지원국

3) 명칭변경 : 경제국 → 창업경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 맑은물사업소

나. 과 단위 : 증 1

1) 폐 지 : 미래도시전략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신산업정책과, 전략산업과, 도로철도과

2) 신 설 : 창업경제과, AI로봇산업과, 에너지산업과, 골목경제과, 시장상권지원과, 철도도로시설과, 도로정비과

3) 명칭변경 : 정보통신과 → 스마트정보과, 노동복지과 → 노동일자리과, 위생과 → 식품위생과, 주택과 → 주택개선과, 환경정책과 → 기후환경정책과, 행정민원과 → 선산민원과, 감염병관리과 → 질병관리과, 농촌지원과 → 농업지원과

3. 조 례 안 : 불 입

4. 참 고 사 항

가. 관 계 법 령

1) 「지 방 자 치 법」 제125조

2) 「지 방 자 치 단 체 의 행 정 기 구 와 정 원 기 준 등 에 관 한 규 정」

제8조 및 제13조

나. 예 산 조 치 : 별 도 조 치 필 요 없 음

다. 합 의 : 감 사 담 당 관, 정 책 기 획 과 와 합 의 되 었 음

라. 기 타 : 해 당 사 항 없 음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구미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3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돌봄국, 창업경제국, 첨단산업국, 골목상권지원단,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및 농촌지원국을 둔다.

제4조(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설치)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담당관: 공무원에 대한 감사, 조사 및 청렴윤리에 관한 사항
2. 홍보담당관: 시정홍보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제5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세정과, 징수과 및 스마트정보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 정책수립
2.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공포 및 소송업무
3. 시의회 운영 지원
4.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5.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
6. 지방세 세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6조(미래교육돌봄국에 두는 과) ① 미래교육돌봄국에 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및 가족정책과를 둔다.

② 미래교육돌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정책, 저출생대책 및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 및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족지원 및 출산정책에 관한 사항
6.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제7조(창업경제국에 두는 과) ① 창업경제국에 창업경제과, 투자유치과, 노동일자리과, 종합허가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창업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창업정책, 창업성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 관리에 관한 사항
7. 노사협력 및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8.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
9. 복합허가민원 종합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토지관리 및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첨단산업국에 두는 과) ① 첨단산업국에 AI로봇산업과, 반도체방산과, 에너지산업과 및 문화산단추진단을 둔다.

② 첨단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AI·로봇산업 정책 및 종합전략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 및 지식산업 연구, 육성지원
3. 반도체산업에 관한 사항
4. 방위산업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정책 및 수급·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선도산업단지 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골목상권지원단에 두는 과) ① 골목상권지원단에 골목경제과, 시장상권지원과를 둔다.

② 골목상권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로컬창업 및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상권 활성화 및 시장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제10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낭만관광과, 체육진흥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 수립, 추진 및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조성 및 문화공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보존관리 관련 사항
4. 축제·관광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6. 체육진흥 육성 및 지원, 시설조성에 관한 사항
7.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11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공공시설과 및 민원봉사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복무, 의전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조정 및 주민행정, 지역여론관리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 선거, 주민투표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인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교육훈련
6. 공무직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8. 민방위 조직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새마을 업무의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10. 시민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1. 지출, 계약,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13.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12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

과, 장애인복지과 및 생활안정과를 둔다.

②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업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어르신복지 및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4.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7. 복지대상자 조사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철도도로시설과, 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개선과, 도로정비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도로 및 교량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도로철도사업의 업무 협의
5.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6. 수변시설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건축물 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 및 거리미관 사업에 관한 사항
9.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0. 주택(빈집)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1. 국·공유재산(도로, 하천, 제방)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환경교통국에 두는 과) ① 환경교통국에 기후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및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환경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대기환경관리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3. 환경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교통수단 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지관리 및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동락공원 관리 및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
9.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0. 매립장 및 환경자원화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농촌지원국에 두는 과) ① 농촌지원국에 선산민원과, 농촌활력과, 축산과 및 산림과를 둔다.

② 농촌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읍·면) 지역 일반민원 및 건축행정,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촌(읍·면) 지역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농촌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농촌공간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5. 축산 경영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우량 종축 개량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8.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지자원화사업에 관한 사항
9.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10.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11. 산림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제16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에 구미보건소·선산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소장 등) ①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센터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건강생활지원센터장·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9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구미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구미시 선산읍 김선로 963에 둔다.

제20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및 농업지원사업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지의 보존 및 이용(승인, 허가 및 협의사항 제외)에 관한 사항

3. 식량의 안정적 생산지도 및 농업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4. 정부양곡 관리에 관한 사항
5. 과수, 원예, 특용작물 생산지도에 관한 사항
6. 4-H조직,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육성
7.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농식품산업 및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9. 지역특산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농업기술, 경영, 농업정책 사업에 관한 상담
12. 지역특화작목 품종개량
13. 새로운 품종 지역적응 시험
14. 과학영농 시설운영
15. 식량작물 및 농업환경개선 기술지도
16. 토양정밀 검정 및 개량 시비법 개선 지도
17. 시설원예(채소, 화훼, 과수)재배기술 지도
18. 농업인상담소 운영

제22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23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4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맑은물사업소

가. 상·하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업무

나.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집행 및 관리

다. 상·하수도 경리 및 세입·세출 결산

라. 상·하수도 사용료 및 기타수입의 과징

마. 시설물(상·하수도)의 확장, 신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바. 취·정수, 생활·공업용수의 생산 및 수질검사, 송·배급수에 관한 사항

사. 상수원관리 및 상·하수도시설의 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아. 간이상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자. 상·하수도 행정관련 업무

차. 하수처리장 업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상·하수도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구미시평생학습원

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나. 강사관리 및 평가·연수

다. 시민평생학습 종합기획 및 평생학습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라. 인문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3. 구미시립중앙도서관

가.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나. 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주관 및 문화강좌 운영

다.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라.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4. 구미시문화예술회관

가.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계획 수립 및 운영

나. 문화예술회관 대관 및 운영

다. 시립 예술단 운영

라. 예술회관 회원제 운영

마.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

5.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가. 금오산도립공원 관리

나. 공원 행락질서 계도단속

다. 공원청소 및 환경정비

라. 입장료, 시설사용료, 과태료 부과징수

마.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

바. 공원내 조경시행 및 수목관리

사. 도립공원 정화, 복원지구의 보존관리

아. 공원매점 사용허가 및 관리

자. 도립공원 개발지구내 불법행위 단속

6.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

가. 차량등록사업소 관리 및 운영

나. 자동차 등록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다. 건설기계 등록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항

바. 이륜차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

7. 구미시서울사무소

가. 중앙과 지방간의 협조체계 구축 등 대외협력활동

나.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활동 및 정책자료 수집

다. 수도권 정보, 자료수집 및 시정홍보 등 시정수행 지원 활동

라. 재정 출향인 시정참여 지원 및 협조체계 구축, 유지

8. 구미시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가. 역사자료관의 관리·운영

나.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다.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 협력

라. 간행물의 제작·배포

마. 역사자료관 홍보를 위한 홍보상품 및 기념품의 제작·판매

바. 그 밖에 역사자료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하부행정기관(읍면동)

제2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8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골목상권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신설,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

행 당시 부서 신설,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중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를 “예산재정과,”로, 같은 목 중 “정보통신과”를 “스마트정보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창업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창업경제과, 투자유치과, 노동일자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나. 첨단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AI로봇산업과, 반도체방산과, 에너지산업과, 문화산단추진단

다. 골목상권지원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골목경제과, 시장상권지원과

라. 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도시계획과, 철도도로시설과, 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개선과, 도로정비과

마. 농촌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선산민원과, 농촌활력과, 축산과, 산림과

제3조제1항제3호바목(종전의 마목) 중 “농촌지원과”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식품산업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위생과”를 “식품위생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환경정책과”를 “기후환경정책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상하수도사업본부”를 “맑은물사업소”로 한다.

② 구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선산출장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구미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 출장소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장소장, 사업소장”을 “사업소장”으로, “출장소, 사업소”를 “사업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시장 및 출장소장”을 “시장 및”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본청, 출장소”를 “본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읍·면·동장, 출장소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시는 총무과장이 출장소는 행정민원과과장이”를 “시는 총무과장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본청은 민원봉사과장이 출장소는 행정민원과과장이”를 “본청은 민원봉사과장이”로 한다.

별표 1 중 “출장소장, 사업소장”을 “사업소장”으로 한다.

④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제국장, 선산출장소장”을
“창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⑤ 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본청, 출장소”를 “본청”으로 한다.

⑥ 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제국장”을 “창업경제국장”으로 한다.

⑦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창업경제국장”으로 한다.

⑧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본청, 출장소”를 “본청”으로 한다.

별표 중 “환경정책과”를 “기후환경정책과”로, “본청, 출장소”를 “본청”
으로 한다.

⑨ 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국장”을 “창업경제국장”으로 한다.

⑩ 구미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선산출장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⑪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3조제3항 중 “선산출장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을 “골목경제과장”으로 한다.

⑫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산출장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⑬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농촌지원과장”을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⑭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선산출장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농식품산업과장”을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산업팀장”을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⑮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시청·출장소·읍·면·동사무소”를 “시청·읍·면·동사무소”로 한다.

⑩ 구미시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선산출장소장”을 각각 “농촌지원국장”으로 한다.

⑪ 구미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선산출장소장”을 각각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⑫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을 각각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⑬ 구미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도로철도과장”을 “도로정비과장”으로 한다.

⑭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창업경제국장

⑮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본청, 출장소”를 “본청”으로 한다.

②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중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구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본부”를 “맑은물사업소”로 한다.

④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산출장소장”을 “농촌지원국장”으로 한다.

⑤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산출장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친환경농업팀장”을 “쌀 생산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과장”을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구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선산출장소장”을 “농촌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통특작과장, 축산과장, 농촌지원과장”을 “농식품산업과장, 축산과장,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

㉘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선산출장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㉙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정보통신과”를 “스마트정보과”로, “전략산업과”를 “에너지산업과”로 하고, “환경정책과”를 “기후환경정책과”로, “상하수도사업본부”를 “맑은물사업소”로 하며, “기업지원과”를 “창업경제과”로, “도로철도과”를 “철도도로시설과”로 한다.

별표 4 중 “정보통신과”를 “스마트정보과”로, “전략산업과”를 “에너지산업과”로 한다.

별표 5 중 “정보통신과”를 “스마트정보과”로, “전략산업과”를 “에너지산업과”로 한다.

㉚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를 “직속기관·사업소”로 한다.

㉛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경제국장”을 “창업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공간정보 업무 담당 국장”으로,

“도시계획과장이되며”를 “공간정보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철도과장”을 “도로정비과장”으로 한다.

③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도시건설국장, 토지정보 과장”을 각각 “담당 국장,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선산출장소장”을 “농촌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구미시선산출장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구미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본청·출장소·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으로 한다.

㉔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사업소, 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

㉕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 중 “지도육성”을 각각 “농업인육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촌지원과장”을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이 조례 시행 후 사무가 신설·분리 또는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 부서의 장, 부서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 부서의 장, 부서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1]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 관련)

< 구미보건소 관할 >

구분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보건소	구미보건소	구미시 선산대로 111(지산동)	구미시일원 (제외 읍·면지역)
건강생활 지원센터	구미건강생활 지원센터	구미시 박정희로 45-7(상모동)	상모사곡·임오동 일원
보건 지소	인동보건지소	구미시 이계북로 149(진평동)	인동·진미·양포동일원

< 선산보건소 관할 >

구분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보건소	선산보건소	구미시 선산읍 선주로 121	구미시 읍·면지역 일원
보건 지소	고아읍보건지소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980	고아읍 일원
	산동읍보건지소	구미시 산동읍 강동로 999-6	산동읍 일원
	무을면보건지소	구미시 무을면 문화마을길 32	무을면 일원
	옥성면보건지소	구미시 옥성면 주아령로 411	옥성면 일원
	도개면보건지소	구미시 도개면 궁기4길 15	도개면 일원
	해평면보건지소	구미시 해평면 송선로 523-14	해평면 일원
	장천면보건지소	구미시 장천면 강동로 184	장천면 일원
보건 진료소	서부보건진료소	구미시 선산읍 배다리길 90	습례1·2리, 봉남1·2리 소재리
	대방보건진료소	구미시 고아읍 포아로 636-5	신촌리, 황산리, 외예리, 내예리
	구운보건진료소	구미시 고아읍 송평로 141	괴평1·2리, 송림리 다식리
	임봉보건진료소	구미시 산동읍 임봉길 55	봉산1·2리, 임천리
	송백보건진료소	구미시 산동읍 송백로 860	백현1·2리, 송산리
	연악보건진료소	구미시 무을면 상송길 11-18	오가1·2·3리, 상송리 안곡1·2리
	덕촌보건진료소	구미시 옥성면 선상서로 582	산촌리, 태봉1·2리 대원1·2리, 덕촌1·2리
	구봉보건진료소	구미시 옥성면 구봉1길 5	구봉1·2리, 옥관1·2리
	가산보건진료소	구미시 도개면 용산가산길 157-1	가산1·2리, 동산리 용산1·2리
	다곡보건진료소	구미시 도개면 도개다곡길 471	다곡1·2리, 신림리 도개1·2리
	낙산보건진료소	구미시 해평면 낙산2길 21-4	낙산1·2·3리, 일선리
	금산보건진료소	구미시 장천면 장천금산3길 10-3	금산리, 오로1·2리

■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23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구미시맑은물사업소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구미시평생학습원	구미시 산호대로 243(공단동)
구미시립중앙도서관	구미시 경은로 85(형곡동)
구미시문화예술회관	구미시 송정대로 89(송정동)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구미시 금오산상가길 12 (남통동)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	구미시 고아읍 농산물시장로 62
구미시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여의도동)
구미시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구미시 박정희로 12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 ④ (생략)

소 관 부 서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손 혁 영
	팀 장	김 태 식
	담 당 자	이 미 래 (480-6773)